

12월 행재정컨설팅

퇴직급여

## 1. 임금의 정의

-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, 봉급,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(근로기준법 제2조)
-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(단, 아래 항목은 제외)
  -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
  -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
  -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또는 상여금
  -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
- 임금채권소멸시효 : 3년(근기법 제49조)
- 「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, 임금액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 마다 적어야 한다」 라고 되어 있음(근로기준법 제48조)
  - NEIS 급여대장 또는 그 밖의 명시된 내용이 들어가는 대장도 가능함.

## II. 임금의 구분 (통상임금)

### ■ 통상임금

- 의미: 근로자에게 정기적·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
- 산입범위

구분	기본급 및 수당
산입	기본급(자격가산금포함), 직무관련수당, 정액급식비, 근속수당, 정기상여금
미산입	명절휴가비,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,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, 맞출형복지비, 가족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

- 적용대상: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,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, 퇴직금, 해고예고수당, 휴업수당, 산전·후 보호휴가급여 등 산정시
- 통상임금(시간급) 계산방법

**[기본급(월급)+통상임금 산입수당 월액] ÷ 월 임금산정시간**

구분	주 소정근로시간					
	주 40시간	주 35시간	주 30시간	주 25시간	주 20시간	주 15시간
월 임금산정시간	209	182	156	130	104	78

## II - 1. 통상임금 (시간급) 계산

- 2020.12월 통상임금(행정실무사, 주40시간 근로, 만2년 근속, 2020.8월 정기상여금 지급받음)

:  $[1,823,000\text{원} + \{130,000\text{원(정액급식비)} + 70,000\text{원(근속)} + 75,000\text{원(상여금)}\}] \div 209\text{시간}$   
= 10,038원    ☞ 정기상여금 월액 : 450,000원 ÷ 6개월로 계산

※ 2020.8월 정기상여금 지급 : 2020.1월~2020.7월 통상임금 산정 시 정기상여금 월액 포함하여 산정

- 2020.12월 통상임금(조리실무사, 주40시간 근로, 만1년 미만 근속, 2020.8 정기상여금 미지급)

:  $[1,823,000\text{원} + \{50,000\text{원(위험)} + 130,000\text{원(정액급식비)}\}] \div 209\text{시간} = 9,583\text{원}$   
☞ 정기상여금은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포함하지 않음

※ 2020.8월 정기상여금 미지급 : 2020.1월~2020.8월 통상임금 산정 시 정기상여금 월액 제외하여 산정

- 2020.3.1.~2021.2.28.까지 육아휴직 시

: 통상임금은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므로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없더라도, 재직하고 있었다면 지급받는 금액으로 산정함(단, 정기상여금은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포함하지 않음)

- 조리(실무)사 위험수당 : 통상임금 계산 시 방학기간 구분 없이 매월 50,000원으로 계산

### III. 임금의 구분 (평균임금)

#### ■ 평균임금

- 의미 :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
- 산입범위

구분	기본급 및 수당
월 단위	기본급, 직무관련수당, 정액급식비, 근속수당,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, 보전금(2020회계만 적용)
연 단위	정기상여금, 명절휴가보전금,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

- 적용대상: 휴업수당, 퇴직금, 장애보상 등 산정 시

☞ 단,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

- 평균임금 계산방법

(①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) ÷ (②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)

## ■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

- 산정사유발생일
-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
- 출산 전·후 휴가기간
-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
- 육아휴직기간
-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기간[『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19조의3]
- 적법한 징의행위기간
- 「병역법」, 「향토예비군설치법」 또는 「민방위기본법」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(단,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)
- 업무 외 부상, 질병,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

## IV. 확정급여형[DB: Defined Benefit)

- 근로자가 퇴직 시에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에 적립된 적립금의 운용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는 제도 따라서, 운용실적에 따라 학교의 부담금이 줄어들거나 늘어남

☞ 퇴직금 산정방법 = 1일 평균임금 x 30일분 x (○년+1년미만기간의일수/365)  
- 1일평균임금=사유가발생한날이전3개월간의임금총액:사유가발생한날이전3개월간의총일수

- ☞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:

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월단위임금+(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 연단위임금\*3/12)

- 월단위임금: 기본급(월급), 직무관련수당, 근속수당, 정액급식비,

연장·휴일·야간근로수당, 근속수당

- 연단위임금: 정기상여금, 명절휴가보전금, 연차유급휴가수당

## V. 확정기여형[DC: Defined Contribution]

- 근로자가 퇴직시에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 대신 사용자가 매년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, 적립금의 운용권한이 근로자에게 있어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의 수준이 변동되는 제도  
따라서, **운용실적에 따라 직원의 퇴직 급여가 줄어들거나 늘어남**  
**퇴직금 : 임금총액의 1/12(가족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, 맞춤형복지비만 제외하고 모든 임금을 포함)**

### ☞ 임금총액이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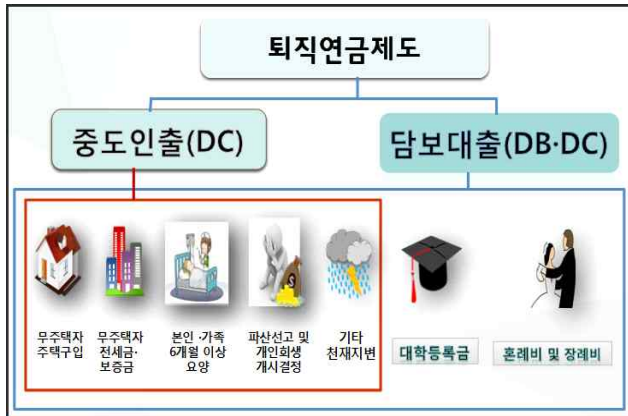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/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.
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,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, 봉급,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

**맞춤형복지비, 가족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외**



## VI. 담보대출·중도인출 법정 사유



## VII. DB(확정급여형)와 DC(확정기여형) 비교

종 류	퇴직금제도	확정급여형 (DB)	확정기여형 (DC)	비 고
주요개념	<b>퇴직급여수준</b> 확정		<b>회사의 부담금</b> 확정	
운용주체	학교	학교	근로자	
지급기준	평균임금×근속년수	평균임금×근속년수	년간임금총액×1/12 이상	
급여형태	일시금	일시금 또는 연금		
운용수익 (이자)	학교	학교	근로자	
추가납입	불가	불가	개인이 추가 연금 불입 가능	연1200만원까지 추가불입가능하며 연400만원까지 연말정산소득공제 가능

## VIII. 교육공무원 전보로 인한 퇴직금 관리

급여종류	전보 전 학교	전보 후 학교	가능여부
퇴직연금	확정급여(DB)	확정급여(DB)	가능
	확정급여(DB)	확정급여(DC)	가능
	확정기여(DC)	확정기여(DC)	가능
	확정기여(DC)	확정급여(DB)	원칙불가
	퇴직연금(DC,DB)	퇴직금	원칙불가
퇴직금	퇴직금	퇴직금	가능
	퇴직금	퇴직연금(DC,DB)	가능

# IX. 전보로 인한 이동 퇴직금 이전 요청 공문

우리 모두를 위한 앞선의 실천, 공익신고

## 학교명

수신 전출학교명

(경유)

제목 20 년 월 일 전출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 이전 협조 요청

1. 관련: 학교현장지원과- (20 . 0. 0.)호
2. 우리학교에서 귀교로 전출한 교육공무직원의 확정기여형(확정급여형)을 다음과 같이 이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가. 퇴직연금내역

순	작종	성 명	전출교	당해연도 퇴 직 금	퇴직금 누계액	퇴 직 금 산출근무 년 수	퇴직연금명 (DC,DB,적형)	퇴직연금 사 업 자	비 고
1	행정실무사								
2	조리사								

### 나. 퇴직연금 이전 처리 방법

- 1) 20 . 00. 00. 전출교에서 20 . 00. 00.까지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예정
- 2) 전입교에서 퇴직연금계좌 또는 개설 후 고유번호증과 개설한 퇴직연금계좌 사본 등 관련서류 첨부 전출교로 공문 시행
- 3) 전출교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로 퇴직연금 전출일 신청서 제출(우편)
- 4) 퇴직연금 사업자간의 협조로 퇴직연금 이전 처리

붙임 1. 20 학년도 전출 교육공무직원 퇴직금 산출내역 1부.

2. 퇴직금 관리대장 1부. 끝.

## X. 퇴직금 수령 방법

### 개인형퇴직연금(IRP)

1. 퇴직급여 수령을 위해 반드시 IRP개설필요
2. 55세 이상 퇴직자 선택에 따라 연금수령 가능
3. 소득공제 목적으로 IRP 개설 후 추가납입가능

(연 700만원 범위)

### 일시금

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가입자

- 일시금으로 바로 수령 가능

연금수급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가입자

- 55세미만 또는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미만

### 연금

퇴직당시 55세이상 연령조건 만족자

# 2020 퇴직금 산출식(DB)

직	성명	1월 통상 임금	1일 평균임금											2020년 계속근로연수				비고					
			퇴직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(A)											퇴직이전 3개월간 총일수 (R)	1일 평균 임금 (A)÷(R) + (R)	년 @	1년 미만 근로 일수 @		(D)= @+ (B)/365	퇴직금 (소액액) =(C)×(D) 환산(소액 임금×365×D)	2019학년도 기 적립금 (F)	2020학년도 적립퇴직금 (G)	
			퇴직이전 3개월간 월정임금					퇴직이전 1년간 비월정 임금															합계 @ = (B) ×3/12
급여	자격가 산급	직무관련 수당(사서, 세외, 연차 수당)	위봉 (명목) 수당	보전급	근속 수당	정액 급식비	연장 근로 수당	소계 @	정기 상여금	명절 휴가비	연차수당 (2020년 2월 지급 비)	소계 @	합계 @ = (B) ×3/12	총합계 (A)= @+@	퇴직이 전 3개 월 간 총 일 수 (R)	1일 평균 임 금 (A)÷ (R) + (R)	년 @	1년 미만 근로 일수 @	(D)= @+ (B)/365	퇴직금 (소액액) =(C)×(D) 환산(소액 임금×365×D)	2019학년도 기 적립금 (F)	2020학년도 적립퇴직금 (G)	
행정사무서명장	91,020	5,469,000	-	-	-	1,000,000	390,000	-	6,909,000	900,000	1,000,000	905,300	2,805,900	701,325	7,610,925	90	91,020	9	-	9	24,575,400	21,328,310	3,247,090
행정남무사교위	87,000	5,469,000	-	-	-	735,000	390,000	-	6,994,000	900,000	1,000,000	972,720	2,872,700	718,180	7,312,180	90	87,000	8	-	8	20,880,000	17,590,800	3,289,200
행정남무사교위	87,000	5,469,000	-	-	-	735,000	390,000	-	6,994,000	900,000	1,000,000	683,310	2,883,310	645,828	7,239,828	90	87,000	4	-	4	10,440,000	7,417,650	3,022,350
사 서	194,800	6,069,000	-	60,000	-	1,470,000	390,000	-	7,989,000	900,000	1,000,000	1,091,280	2,891,280	732,820	8,721,820	90	194,800	9	-	9	28,296,000	24,542,000	3,754,000
영양사	191,430	6,069,000	-	276,000	150,000	840,000	390,000	-	7,725,000	900,000	1,000,000	1,091,280	2,891,280	732,820	8,457,820	90	191,430	9	-	9	27,386,100	23,542,000	3,844,100
조리사	194,460	2,843,560	-	-	73,140	1,880,000	190,170	-	4,786,670	900,000	1,000,000	1,159,320	1,083,320	763,330	5,550,200	90	194,460	9	-	9	28,204,200	24,838,400	3,375,800
조리실무사	190,870	2,843,560	279,450	-	73,140	1,880,000	190,170	-	5,060,320	900,000	1,000,000	948,480	2,848,480	712,120	5,772,440	90	190,870	9	-	9	27,261,900	24,242,400	3,019,500
급식보조원	48,320	2,734,500	-	-	-	420,000	190,170	-	3,344,670	900,000	1,000,000	948,480	2,848,480	712,120	4,056,790	90	48,320	4	-	4	5,798,400	3,242,400	2,556,000
교육교육지도사	99,060	2,703,330	-	-	-	1,880,000	190,170	-	4,578,500	900,000	1,000,000	1,098,340	2,918,340	733,835	5,307,835	90	99,060	9	-	9	26,746,200	23,570,000	3,176,200
교육교육연습사	71,240	4,101,750	-	-	30,000	840,000	390,000	-	5,361,750	900,000	1,000,000	528,710	2,428,710	607,178	5,968,928	90	71,240	4	-	4	8,548,800	6,471,500	2,077,300
교육교육연습사	59,500	3,190,250	-	-	-	78,750	292,500	-	3,991,500	675,000	750,000	416,890	1,841,890	460,473	4,021,973	90	59,500	2	-	2	3,570,000	1,520,240	2,049,760
2019년 3분기말	67,200	2,347,580	-	-	-	525,000	390,000	-	3,262,580	900,000	1,000,000	528,710	2,428,710	607,178	3,869,758	90	67,200	5	-	5	10,080,000	6,471,500	3,608,500

## 퇴직금 계산식

☞ 퇴직금 산정방법 = 평균임금 30일분 × 계속근로연수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C)년+1년미만기간의일수/365)

☞ 1일 평균임금 =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÷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

퇴직금 산출시 1일 평균임금에 1월 통상임금보다 저렴한 경우에는 1월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출시 적용한다.

☞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÷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월정임금 + (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 비월정임금 × 3/12)

☞ 퇴직이전 3개월간 월정임금 : 예를 들면 2월 지급되는 임금급여, 연차기산수당, 위봉(명목)수당, 직무수당, 직무수당(사서, 세외), 조리사자격간수당, 근속수당, 정액급식비, 연장근로수당등. **개인별 지급액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**

☞ 퇴직이전 1년간 비월정임금 : 정기상여금, 명절휴가비, 연차수당, 연장근로수당, 연장근로가산금, 휴일근로수당등

☞ 자녀학비보조수당, 가족수당, 맞출형복지비, 퇴직금 산정시, 제외됨

☞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총일수 : 퇴직이전 3개월간 총 일수를 계산하여 기재 예) 퇴직이전 3개월(2020.12.1~2021.2.28 일수 → 90일

교육 급식종사원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로, 연장근로가산금, 휴일근로수당등 포함한 퇴직금을 재 산출하여 차액분은 학교에서 지급

# 2020 퇴직금 산출식(DC)

직	성명	월급	년 간 임 금 총 액										소계 (A)	2020학년도 적립퇴직금 (B)=(A)*1/12	비고
			직무관련 수당(사서 세입,면허 수당)	위험(관리) 수당	자격 가산금	보전금	정액급식비	근속수당	연차수당 (2020년도 지급분)	경기 상여금	명 절 휴가비	연장.야간. 휴일			
행정실무서(행정)		21,876,000	-	-	-	-	1,560,000	4,200,000	966,210	900,000	1,000,000	966,210	31,468,420	2,622,360	
행정실무서(교외)		21,876,000	-	-	-	-	1,560,000	2,940,000	683,310	900,000	1,000,000	683,310	29,642,620	2,470,210	
행정실무서(교외)		21,876,000	-	-	-	-	1,560,000	2,940,000	683,310	900,000	1,000,000	683,310	29,642,620	2,470,210	
사 서		24,276,000	240,000	-	-	-	1,560,000	5,880,000	1,031,280	900,000	1,000,000	1,031,280	35,918,560	2,993,210	
영양사		24,276,000	1,104,000	600,000	-	-	1,560,000	3,360,000	1,031,280	900,000	1,000,000	1,031,280	34,862,560	2,905,210	
조리사		18,237,780	-	523,140	998,400	-	1,365,000	6,720,000	1,153,320	900,000	1,000,000	1,153,320	32,050,960	2,670,910	
조리실무사		18,237,780	-	523,140	-	-	1,365,000	6,720,000	948,480	900,000	1,000,000	948,480	30,642,880	2,553,570	
급식배식원		10,938,000	-	-	-	-	780,000	1,680,000	528,710	900,000	500,000	-	15,326,710	1,277,220	
특수교육지도사		18,097,550	-	-	-	-	1,365,000	6,720,000	1,035,340	900,000	1,000,000	1,035,340	30,153,230	2,512,760	
특수보육원장사		16,407,000	-	-	-	-	1,560,000	3,360,000	416,890	900,000	1,000,000	416,890	24,060,780	2,005,060	
특수보육원장사		15,495,500	-	-	-	120,000	780,000	315,000	946,460	675,000	750,000	946,460	20,028,420	1,669,030	
유치원장(유치원장)		14,652,830	-	-	-	-	1,560,000	2,100,000	946,460	900,000	1,000,000	946,460	22,105,750	1,842,140	
시설당직원		17,568,480	-	-	-	-	-	-	538,950	-	900,000	-	19,007,430	1,583,950	
시설미화원		16,104,440	-	-	-	-	-	-	538,950	-	750,000	-	17,393,390	1,449,440	
퇴직금 계산식															
• 자녀학비보조수당, 가족수당, 맞춤형복지비, 퇴직금 산정시, 제외됨															